

호주 정부, IT 의사결정시스템 활용 가이드 발표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원 문정욱
(T. 570-4366, jwmoon@kisdi.re.kr)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행정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시스템 구축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IT를 활용한 정부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e-지원시스템, 하모니 시스템 등 IT를 활용한 정부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발 및 확산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호주 정부는 의사결정시스템 활용 가이드(Automated Assistance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etter Practice Guide)를 발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의사결정시스템 활용 가이드의 주요 내용

호주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였다. IT 의사결정시스템의 활용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IT 의사결정시스템의 활용 방법

- 의사결정
- 의사결정권자에게 조언
- 관련 법제 및 관련 정책 등의 제공
- 의사결정지원(조언, 관련 법제 및 사례 제공 등)
- 평가 툴

최근 발표한 IT 의사결정시스템 활용 가이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T 의사결정시스템의 도입이 적절한 공공부문, 개발과 거버넌스, IT 의사결정시스템의 설계, 정확성

제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시스템 유지 및 보수, 전체 요약 및 체크리스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이드는 각 기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IT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념 및 기본 절차, 관련 주요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는 지난 2004년 11월, 호주 정부의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ARC)에서 발표한 “Automated Assistance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의 27개의 주요 원칙을 법제화, 공정성, 합리성, 개방성(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시켰다. 정부 IT 의사결정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IT 의사결정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조건

- 시스템 적합성 평가
- 적절한 프로젝트 관리와 IT 의사결정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 미래의 요구를 수용하는 IT 의사결정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구축
- IT 의사결정시스템의 정확성 유지
- IT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모색
- IT 의사결정시스템의 적절한 유지 보수

3. 결 어

위에서 살펴본 가이드를 통해 IT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투명성·개방성·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호주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기획기능 중심의 중앙정부보다는 집행기능을 보다 많이 지닌 지방정부의 조직에서 정보기술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결정 등의 기획기능에는 상대적으로 IT가 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세계 일류 IT 선도 국가의 위치를 고수하고, 공공정보화의 활용을 제고하고, 그리고 전자정부의 성숙화를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활용을 의사결정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등의 기획업무까지 충실히 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 심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지식관리 및 지식경영 등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IT 의사결정시스템은 정책기안부터 결정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행정업무를 혁신하는 기본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 [1] Australian Government(2007), 『Automated Assistance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etter Practice Guide』
- [2] <http://www.agimo.gov.au/>

영국의 망중립성 논의 동향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오수민
(T. 570-4037, sumin@kisd.re.kr)

1. 개 요

미국을 중심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06년 한해 미 의회에서는 법제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2006년 12월 29일 FCC의 AT&T와 BellSouth 합병인가 조건에 망중립성 조항이 포함되고, 모든 망사업자가 엄격하게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한 법안이 2007년 1월 9일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면서 최근 FCC는 망중립성 보호관련 정책의 강화조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 지연시간에 민감한(time-sensitive)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증가, 네트워크 라우터의 기능향상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망중립성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때문에 망중립성 관련 국내연구도 주로 미국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의장과 산업대표들 및 일부 양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회에서 열린 'Westminster eForum'은 상대적으로 망중립성 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유럽의 통신시장 환경과 향후 규제방침 등을 다룬 공식적인 첫 논의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Ofcom과 Ovum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망중립성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2. Ofcom의 입장

망중립성의 주창자인 Lessig과 Wu는 망중립성 개념에 대해 인터넷망의 개방성, 중립성에 따른 혁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망중립성 논쟁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 및 콘텐츠/어